

# 사회당 강령

- 2009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 2006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 2003년 5월 11일 전부 개정
- 1998년 11월 29일 제정

1. 전문
2. [경제사회에서의 배제 극복]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
  1.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극복하여 시대를 전환한다.
  2. 배제 없는 경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간다.
3. [국가사회와 정치에서의 배제 극복]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보장되어 모두가 대등한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공화국’
  1.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2. 1987년 헌법의 미완성적 성격과 내적 한계를 극복한다.
4. [시민사회에서의 배제 극복]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
  1. 정보·통신·미디어의 탈(脫)상품화와 탈시장화를 통해 가치·담론·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2.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으며 소수자와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사회
5. [생태 사회로의 전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생태 사회
6. [평화 강령] 비핵·평화 체제의 수립과 평화 국가로의 전환
  1. 정전협정 체제인 1953년 체제를 비핵·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동북아시아에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를 수립한다.
  2. 평화 국가로의 전환
7. 부속 강령 (1)
  1. 배제 없는 경제
  2.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약자에 대한 연대에서 평등한 권리로!
  3.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공화국을!
  4.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규제한다.
  5. 기본소득은 서민 중심의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여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이룩한다.
  6. 기본소득은 사회적 경제의 기초이며 경제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7. ‘임금노동의 사회’를 넘어 모두의 일이 인정받는 ‘사회적 필요 활동의 사회’로!
8. 청년진보당-사회당 강령 개정의 역사와 2009년 강령의 의의
  1. 청년진보당 강령
  2. 청년진보당 강령부터 사회당 2003년 강령까지
  3. 2003년 강령부터 2006년 강령까지의 발전과 2006년 강령의 의의
  4. 2009년 강령 개정의 의의
  5. 2009년 강령의 발전 방향
9. 부속 강령 (1) 영문버전
  1. Economy of No Exclusion
  2.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from charitable solidarity to Equal Right

3. Social Republic by Basic Income and Universal Welfare!
  4. Restrict Neoliberalist Expropriation Economy by Heavy Taxation on Exploitative Speculation and Unearned Income for Financing Basic Income
  5. Basic Income Activates Domestic Economy and Thus Facilitates Joint Growth of Exportation and Domestic Consumption
  6. Basic Income Is Foundation of Social Economy and Contributes to Advance of Economic Structure
  7. Beyond Society of Wage Labor to Society of Socially Demanded Activity where Everyone's Work Is Appreciated
10. 부속 강령 (1) 독일어
1. Eine Wirtschaft ohne Ausgrenzung
  2. Von selektiver Sozialfürsorge zu allgemeiner Sozialfürsorge, von karitativer Solidarität mit sozial Schwachen zu Gleichberechtigung
  3. Durch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zur Sozialen Republik
  4. Einschränkung der neoliberalistischen Enteignungsökonomie durch hohe Besteuerung von Einkommen aus ausbeuterischen Spekulationen und Kapitalerträgen zur Finanzierung des Grundeinkommens
  5. Das Grundeinkommen kurbelt den Inlandsmarkt an und begünstigt so die gleichzeitige Zunahme von Ausfuhr und Inlandsverbrauch
  6. Das Grundeinkommen ist der Grundpfeiler der Sozialwirtschaft und trägt zur Verbesserung der Wirtschaftsstruktur bei
  7. Von einer Gesellschaft der Lohnarbeit zu einer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lich nachgefragten Tätigkeiten, in der die Arbeit aller Menschen wertgeschätzt wird

## 전문

우리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다.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다다른 시대, 달러 지배 체제의 위기, 세계경제 위기의 시대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이 고용 축소를 낳는 시대, 고용 위기의 시대이며, 공공성의 파괴와 복지 삭감으로 국민의 사회적 공통성이 파괴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시대,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테러리즘, 국외 파병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 인민의 안전이 항상 위기인 시대, 전쟁 위기의 시대이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무시하는 개발 지상주의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시대, 자원과 에너지 위기의 시대, 생태 위기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총체적이며 보편적인 위기, 전 세계적 위기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국가와 사회에서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1997년 금융 위기 이후로 진행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내수, 고용, 서민 경제의 위기를 낳았고 사회 양극화를 불러왔다. 금융 공공성이 파괴되었고, 공공 부문은 사유화되고 사영화되었고, 노동은 유연화되었다. 경제의 양적 성장이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인데도 복지는 노동 연계 복지로 설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복지 제도는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에 불과했고 낙인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비정규직, 실업자, 빈민이 경제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뜻했다. 그 결과 국민의 사회적 공통성은 파괴되었다. 국민 공통성의 파괴로 ‘모두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은 껍데기만 남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신자유주의는 국민 공통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평등한 선거권과 절차 문제로 축소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탈규제 정책, 부자 감세 정책, 시장화 정책으로 경제 위기의 고통은 서민과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대중 저항에도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더욱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1987년 헌법의 성과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유권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97년 이래 신자유주의는 1987년 헌법의 실현을 가로막는 원인이며,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이다. 2008년 이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는 1987년 헌법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도 있다.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서민 경제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만이 아니다. 전쟁 위기와 생태 위기 또한 한국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핵 대결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체제는 아직 비핵·평화 체제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토건국가’식 개발과 핵 발전으로 생태 위기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이 생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는 극복과 전환을 요청한다.

위기의 시대에 정치는 전환을 추진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전환은 결코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완화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환은 이 시대의 위기의 극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이전의 복지 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경제, ‘대안 경제’를 수립하는 것이며,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기본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통하여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꺾이기만 남은 1987년 헌법을 넘어 국민 모두의 나라,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란의 시대를 끝내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비핵·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일, 국외 파병이 없고 대체 복무가 가능한 ‘평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의 목표는 산업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 시대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보장된 새로운 ‘생태 사회’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시민사회·국가 영역의 모든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배제도 없는 사회를 수립하는 것,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의 과제를 분명히 밝히고 대안을 수립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사회·국가사회·시민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배제된 대중을 대표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정치적 다수파에게 허용하는 권력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시대를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것이다.

## I. [경제사회에서의 배제 극복]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

### 1.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극복하여 시대를 전환한다.

기술혁신은 고용 창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노동자는 해고되고 생산 설비와 같은 불변자본의 비율은 높아진다. 그 결과, 실물 부문의 이윤율은 떨어진다. 이윤율의 저하는 자본

의 과잉을 낳는다. 그 결과, 자본 간의 경쟁은 격화된다. 1970년대 중반 영미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으로부터 비롯된다. 자본은 세계화, 노동 유연화, 시장화를 통하여 착취를 강화한다. 자본 주도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적 저임금을 추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노동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임금을 떨어뜨린다. 사회 복지를 축소하고, 사회 전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이윤 창출 영역을 넓히며 경쟁을 격렬하게 부추긴다. 그럼에도 이윤을 저하와 자본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본은 금융적 축적을 추구하게 된다. 증권화와 파생 상품화를 통하여 미래 수익을 현재에 실현하는 의제자본이 등장하고,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사회적 부가 금융자본의 수중으로 흘러들어 가는 금융 주도의 축적 체제가 수립된다. 최소한의 금융 공공성을 유지하던 '은행 자본주의'는 영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시장 자본주의'로 탈바꿈한다. 이와 같은 금융화의 본질은 자본이 실물 생산에 관계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총 이윤을 배분받는 것이다. 이는 곧 수탈이다. 신자본주의는 금융적 방식의 수탈 이외에도 공공 부문의 사유화와 사영화, 규제 완화, 지적 재산권의 강화,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지대적(地代的) 방식의 수탈에도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충분치 않을 때 자본은 군사적 방식을 통해 에너지자원 등을 확보하는 외부 수탈에 나선다. 신자본주의는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경쟁적 착취 경제일 뿐만 아니라 금융적, 지대적, 강압적 수탈 경제이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위기는 신자본주의 수탈 경제의 위기와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미래 수익을 가상적으로 실현하는 의제자본은 과도한 신용창조로 과잉생산을 유발했지만, 세계적 저임금과 대중의 빈곤화로 수요가 창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제자본은 자산 거품, 부채 증가, 붕괴의 시나리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채권에 근거를 둔 증권 같은 신종 의제자본이 등장하여 빈곤층의 가계까지 금융의 대상으로 만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는 세계경제의 규칙을 정하고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 같은 금융 패권 국가도 의제자본이 만든 거품의 붕괴를 다소 지연시킬 수 있을 뿐, 붕괴를 피할 수는 없었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미국의 금융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확대되었고,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다.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수요 위축을 막기 위해 서둘러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급격한 붕괴는 피했을지언정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작 되짚어 볼 것은 무엇을 위한 재정 확대이며 누구를 위한 재정 확대인가이다.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재정 확대는 미봉책일 뿐이다. 그것은 서민들이 언젠가는 되갚아야 할 세금만 늘어나는 재정 확대이며, 결국 또 다른 방식의 수탈 경제, 국가 재정을 통한 수탈 경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황의 주범인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도 재정적 방식의 수탈 경제일 뿐이다. 재정적 수탈을 위한 국가의 귀환은 신자본주의 종식도 아니며 위기 극복의 수단도 되지 못한다. 이런 방식의 국가는 신자본주의 역사에서 늘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유럽의 사회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자본주의에서의 국가도 늘 시장에 개입해 왔다. 개입의 목표와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금융 주도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드는 개입, 공공 소유에 대한 수탈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입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국가 주도의 신자본주의 수탈 경제의 전개는 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위기의 폭과 깊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지연책이 아니다. 시대는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환은 신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대를 전환하는 대안 경제의 출발점은 신자본주의 수탈 체제의 극복에 있다. 대안 경제는 금융적, 지대적, 강압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애므로써 신자본주의 극복을 추구한다. 또한 자본 주도의 세계화가 아닌 연대와 호혜성에 입각한 세계경제를 지향하며, 달러 패권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수립을 추구한다.

첫째, 금융적 수탈 체제를 없애기 위해 대안 경제는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용 양극화를 해소한다. 아울러 증권화와 파생 상품화를 규제하고, ‘주주(株主) 자본주의’에 대한 공공의 통제 수단을 확보하며, 투기 자본을 규제한다.

1) 대안 경제는 금융 공공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신용의 기능을 영리가 아니라 대중의 복지, 생태 친화형 대안 발전 등 공공의 목적에 대한 봉사로 본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은 주요 은행 국유화, 기타 은행의 추가 사유화 방지, 신용 양극화 해소이다. 물론 이때 국유화는 개발주의 시대의 ‘관치 금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대안 경제는 금융 감독 기구의 민주화,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사회적 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운영을 꾀한다.

2) 경제 약자에 대한 금융 배제의 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 지방은행과 서민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한다. 아울러 이자율 상한제를 통해 고리 대금업을 규제한다. 이때 금융기관의 설립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는 기존 금융 수탈로 일부가 독점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시행 자체가 금융 공공성을 확대하는 획기적 방식이다. 그 밖에 금융 수익의 지역 재투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을 규제한다. 이를 통해 금융 자산이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하게 한다.

3) 금융 수탈 체제의 해소는 증권화와 파생 상품화에 대한 규제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은행과 금융회사의 파생 상품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이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신용카드를 국유 금융기관만 발급하게 하고 수수료는 0%로 한다. 「증권양도소득세」(가칭)를 도입하여 양도 차익에 대해 대주주,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별로 차등 과세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 과세한다. 배당에 대해서는 30% 이상 과세한다. 아울러 「주식거래세」를 개정하여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 고율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 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한다. 대량 보유 주식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4)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연기금을 운용한다. 「연기금사회책임투자법」(가칭)을 제정하여 연기금 투자의 목적을 영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에 제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기금이 투기되는 것을 막고, 또한 연기금과 국유화된 주요 은행들을 통해 거대 자본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실현한다.

5) 토빈세와 환율 변동에 따라 세율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외환거래세(CTT) 등을 도입하여 투기 자본을 규제한다.

둘째, 대안 경제는 지대적 수탈 체제를 없애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한다. 지대적 특혜 경제를 조성하는 공공 부문의 사유화와 사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환수한다. 물, 전기, 가스, 교육, 보건, 운송, 통신 등 기간산업과 공공재와 사회 서비스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한다. 공공 부문의 지배구조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회적 자주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토지 공유 개념에 입각한 고율의 토지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 또한 대안 경제는 모든 새로운 지식은 인류 공동의 지적 재산에 의존한다는 관점 아래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셋째, 대안 경제는 군사적·억압적 수탈에 반대하는 평화 경제이다. 지역과 세계 수준의 평화 균축을 통해 군수산업을 없애고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에 평화 경제를 수립한다.

넷째, 대안 경제의 국가 재정 원칙은 재정 확대이다. 그러나 금융 수탈자를 구제하기 위한 재

정 확대, 안보 예산과 토건 예산을 위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기본복지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 확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 확대이다. 대안 경제는 이를 위한 재원을 투기 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조달하며 이로써 금융적 수탈과 지대적 수탈을 없앤다. 아울러 고율의 환경세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생태적 기초를 부여하고, 환경 기본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생태적인 대안 발전이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대안 경제는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을 목표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을 국제연합(UN) 산하에 두고 여기서 국제통화를 발행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이 전 세계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자국의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달러 패권 체제를 종식한다. 국제연합의 관리 아래 지구적 기본소득을 실시하여 국제통화량의 증대는 오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안 경제는 연대성과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계무역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서민 중심의 국내 경제를 강화하고 대외 의존성을 줄이는 전략 등을 통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 대외 경제 관계는 세계적 금융 수탈 체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선별 개방과 통제된 개방에 근거하여야 한다. 점차 심화되는 지구의 식량 위기 시대를 맞아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개방은 특히 통제되어야 한다.

## 2. 배제 없는 경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간다.

비자발적 실업자,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가사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등 수많은 종류의 ‘그림자 노동’ 종사자, 신용 불량자, 노숙인, 빈곤 노인 등 엄청난 수의 대중이 경제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그들은 임금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기회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거나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소비 영역에서 이들은 자본주의적 경제사회에 통합되지 않을 수 없다. 땀감을 구하러 나무 하러 갈 수도 없고 수렵이나 채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 영역에서의 통합은 때때로 경제 학살에 해당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 안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경제사회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당하며 사회 밖에 존재하는 생물의 상태로 전락한다. 육체 보존조차 극히 예외적 방식, 즉 구걸과 자선 등에 의존한다. 노숙인이 전형적인 예이다. 비록 소득을 약간 얻을 수 있다 해도 소비 영역에서의 통합은 고통이 될 뿐이다. 실업 대중과 노동 빈곤층이 전형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도 소비 영역에서의 통합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전형적인 예이다. 소득이 반드시 노동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할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된 사람들에게 노동 기회의 박탈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의 부족을 뜻한다. 소득의 부족은 경제사회 안으로의 통합을 고통으로 만든다.

자본주의가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대중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은 산업혁명기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혁명 이후 오늘날의 경제는 이미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혁신과 산업 재편성이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가 생산자본의 확대에 추가 고용이 창출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시대이다. 신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가능했던 완전고용 경제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시기임을 실증하였다. 신자유주의에서 완전고용이 가능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고, 그러한 방식의 완전고용은 노동 빈곤층이 지금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거나 노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 대중의 일반적 삶의 양태가 되어 버린 초유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는 핵심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완전고용 사회를 전제하는 기존 복지 체계를 개편하여,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액수의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 현물과 서비스 형태의 기본복지를 제공한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금융 공공성이 수립된다면 이들에 대한 금융 배제도 극복하여, 이들을 경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양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는 우파 대중영합주의(파퓰리즘)는 사회에 불필요한 저임금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 노동빈곤층을 양산할 뿐이다. 물론, 산업의 변화에 맞춰 고용의 안정성과 가능성을 높이는 산업교육 및 직업교육의 체계는 실제 고용 효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필요하다. 대안 경제는 교육체계를 산업과 생산의 체계에 따르는 독자적 사회체계로서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 유연화에 대응하는 최소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오직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를 전제할 때만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부여하지만, 노동과 생산으로부터의 배제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한 배제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은 오직 고용 창출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불필요하게 저임금 일자리를 늘려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방법은 시대를 전환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시대의 전환은 오직 새로운 통합 방식의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통합 방식이다.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기본복지 체계는 생활 영역에서 최소 안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기본복지 강화로 공공 부문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일자리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복지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도 혁신한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가 날로 늘어나는 한국에서 중요한 전환의 의미가 있다. 기본복지의 확충은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 지불하는 비용을 사회가 떠맡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생긴다. 이처럼 기본복지 확충은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런데 기본복지의 확충이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의 도입도 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이자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이기도 하다. 고용 불안정이 소득 불안정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은 오히려 기본소득의 소극적 의의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생산 영역으로부터의 배제를 인정한 채 소비 영역에 의한 재통합만을 꾀하는 소극적인 대안이다.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액수가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면,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굳이 무리하게 잔업, 특근, 철야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노동이나 과잉 노동은 감소하며, 노동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지고, 과잉 노동이 감소하여 일자리 수요도 늘어나 고용 증대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효과도 기본소득의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의의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의의는 임금노동의 형태를 벗어난 자발적 노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에 고용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임금노동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활동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하는 노동 등 임금노동을 벗어난 자발적 노동에 사회적 기초를 부여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노동의 사회적 형태와 성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적 변화도 촉진한다.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은 창의적인 지식 기반 노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경제구조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비자발적 실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동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임금노동의 틀 밖에서 노동의 사회적 형태가 수립되면 임금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수 있다. 노동 개념의 전환이야말로 기본소득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전환이다. 이는 기본복지 확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기본소득이 노동 시간 단축의 효과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전환,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전환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형태에 입각한 완전고용 사회를 넘어 다른 형태의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며,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동시에 가장 전환적인 해법이다. 이 시대의 진보적 경제 대안은 시야를 생산과정, 임금과 분배, 소유관계, 관리 체제 등 전통적으로 진보 대안이 다루어 왔던 영역에만 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이 시대의 대안이 그러한 영역에서의 과제를 도외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과제로 유효하다. 단지 현실적 조건이 바뀌어 전통적인 영역에만 한정된 해법들은 더 이상 사회 전체에 대한 대안일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생산 영역에 포섭된 노동자들도 배제된 채 포섭되어 있을 뿐이다. 대개 임금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한다. 생산 결과의 분배에서도 임금은 이윤에 대한 분점이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비용의 충당을 뜻할 뿐이다. 진보적 대안 경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뿐 아니라 임금노동을 통한 배제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20세기 노동조합운동이 생산과정의 민주화나 경제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요구했던 제도들, 즉 노동자도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노사공동결정제, 물가상승률과 임금의 연동 관계, 나아가 노동자의 이익분점권, 소유관계와 지배관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등은 여전히 실현을 요구하는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구들이 생산과정의 의사 결정, 소유관계와 지배관계, 분배 방식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안 경제의 궁극적 지향은 기업별 노동자 자주 관리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자주 관리이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만인의 진정한 통합,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통합이 실현되는 것이다.

20세기 노동조합운동은 임금노동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나 임금노동에 기인하는 배제의 극복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그들이 당시 조건 속에서 제출한 대안은 변화된 조건에 맞게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에는 20세기 노동조합운동의 성과물을 지키는 것이 미완의 지향을 실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대표적인 예가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이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직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들을 철폐하고 노동 삼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산업 재해로부터의 안전보장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밖에, 노사 교섭 영역에서도 산별 교섭이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는 산별 교섭 체제의 수립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지만 산별 교섭 체제가 수립된 국가들에서도 노동조합운동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가 보장될 정도로 충분한 액수가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면, 노동시장에서 개별 노동자의 교섭력은 강화되고,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교섭력을 높여 임금과 노동조건 교섭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 이외에도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여성 노동의 다수를 점하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비정규직 확산은 이미 세계적 현상이다. 신자유주의는 수탈 체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된 착취 체제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저임금 경쟁 구조를 수립했고,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비정규직은 일반화되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차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보편적 복지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업별 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고용 불안은 그대로 복지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나아가 비정규직은 임금 차별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유



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동일 노동·동일 고용조건·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고용형태와 임금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 하고, 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Ⅲ. [국가사회와 정치에서의 배제 극복]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보장되어 모두가 대등한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사회적 공화국’**

**1.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 제1조의 실질적 관철을 위한 민중 투쟁의 역사이다. 민중은 1960년 4월, 1980년 5월, 1987년 6월의 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했으며 자신을 주권자로 세웠다. 절차적 민주주의, 자유권 보장, 법치주의 등은 분명히 민중 투쟁과 국민주권 운동의 전과(戰果)로 도입되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노동자 투쟁은 노동삼권의 보장이라는 성과를 이룩했고, 1990년대 이후 점차 여성, 환자, 이주 노동자, 소수자 등이 시민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조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의 진정한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얻고,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 기본복지가 보장될 때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적 권리들이 모든 국민에게 당연한 권리로 주어질 때만, 국민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얻으며, 비로소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사회 영역에서 대중이 배제되지 않을 때만 국민주권 원칙이 비로소 현실의 원칙일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국가의 존립 조건이며,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관철된 신자유주의는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이 의미를 잃을 정도로 점점 더 많은 국민 대중을 경제사회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배제했다. 사회가 ‘불로소득자’와 ‘경제사회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된 자’의 양 극단으로 쪼개지고, 국가 공동체의 의미에서 ‘나라’가 더는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국민 공통성마저 해체된다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이를 수 없는 꿈이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실질적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헛된 소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7년 민주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던 민주개혁세력은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을 통해 1987년 운동이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아예 틀어막고 말았다. 이 결과가 한나라당의 2007년 집권과 2008년 의회 장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서도 그나마 최소 수준에서 잔여적 형태로 도입되었던 복지조차 삭감하고, 공공 부문을 사유화하고 사영화하여 지대적 특혜를 나누어 주며, 서민 경제의 희생을 통해 부익부·빈익빈의 자산 재분배를 추구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배제는 평등선거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가와 무관하게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든다.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수립하는 운동이다. 민주주의 발전 정도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은 영역별, 생애 주기별 기본복지 체계의 수립과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수립하는 운동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영리 병원으로 인

한 의료 양극화를 막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배제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잡아먹는 오늘의 현실을 바로잡는 운동이며, 국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운동이며, 모든 국민이 보육과 노후에 대해 근심하지 않아도 되도록 복지 체계를 수립하는 운동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 모두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을 새로이 수립하고 사회 공공성을 보장하여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화국’으로 만드는 운동, ‘민주공화국’을 ‘국민 모두의 나라’로 보고 이에 따라 헌법 제1조를 실질화하여 민주공화국을 국민 모두의 나라로 만드는 운동, 바로 사회적 공화주의 운동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운동과 떨어질 수 없다. 민주주의 운동은 2008년 이전의 상태, 신자유주의 틀 안에 갇힌 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운동이 아니다. 민주주의 운동은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여 1987년 이후 미완성인 채 후퇴를 거듭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운동, 바로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회 영역에서의 탈배제(脫排除) 운동이다.

2006년 강령 개정 이후 사회당은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펼쳤으나 2007년과 2008년의 정치적 전환이 다수 국민을 사회경제적으로 더 많이 배제하고 국민 공통성을 더 많이 해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위한 새로운 국민주권 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8년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외쳤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2.1987년 헌법의 미완성적 성격과 내적 한계를 극복한다.**

1987년 헌법은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뜻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헌법 국가의 역사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울러 비록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지만, 1987년 헌법의 경제조항들에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마리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활성화하고 더욱 전개하는 과업,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1987년 헌법의 완성은 민주주의 정치운동의 시대적 과업이다.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은 대중의 경제적 배제 극복이 민주주의 운동의 고유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따라서 1987년 헌법의 완성 역시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운동과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은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보장되는 국민 모두의 나라, ‘사회적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또한 사회적 공화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완성의 문제 이외에 1987년 헌법의 자랑할 만한 성과 가운데에도 고유한 한계가 드러난다. 일단, 비록 선거법상의 문제이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 아래서 결선투표가 없는 국회의원 선거제나 대통령 선거제도도 대표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국회의원 선거도 완전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제도도 1987년 헌법이 안겨 준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원칙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임의성과 포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재판관 선임 절차의 개혁도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선임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한계는 1987년 헌법에도 예산비법률주의(豫算非法律主義)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1987년 헌법에서 예산은 입법 주권의 행사가 아니며 국회에게는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만 있다. 예산비법률주의 아래서 총액예산제와 전략적 재정계획제도 등은 철저히 행정부 주도의 예산 제도가 되며 국민과 국회의 예산 주권은 축소된다. ‘시민 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재정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일반 법률처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거치는 예산법률주의(豫算法律主義)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한국과 일본만 예외적으로 채택한 예산비법률주의를 예산법률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도입, 국민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1987년 헌법을 보완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키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IV. [시민사회에서의 배제 극복]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

##### 1. 정보 · 통신 · 미디어의 탈(脫)상품화와 탈시장화를 통해 가치 · 담론 ·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시민사회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별 없는 대등한 시민의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사회의 통합도 배제적 통합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로부터의 배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의 배제, 담론과 소통으로부터의 배제 등이 시민사회로부터 시민이 배제되는 대표적 예들이다. 이러한 배제에도 형식적 시민성과 형식적 국민 규정 아래로의 통합은 치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디어 자본이 주도하는 일방적 소통 체계는 시민 개인을 철저히 수동화하면서 문화 다양성과 담론 다양성을 억누르고 짓밟는다. 이와 같은 통합은 특히 소수자와 이주자에게,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에게도 예나 다름없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이를 부인하는 일방적이고 외적인 통합, 폭력적이고 반문화적인 통합을 뜻하며 극단적일 때는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담론과 문화 시장은 비록 다양성 존중을 미덕으로 내걸지만, 시장 형태로서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소통에 의한 통합은 언제나 소통으로부터의 배제를 전제한다.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실현할 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개별 시민은 소통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배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광고처럼 일방적인 지배 담론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통합된다. 미디어 시장을 통한 통합은 늘 배제적인 통합일 뿐이다.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상품 형태가 아니고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문화, 담론, 소통의 형태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참여자의 자주 관리 체계를 통해, 시장을 벗어난 정보 · 지식 · 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미디어 자본의 수중에 장악된 유무선 통신망,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인간적 보편성, 민주성, 가치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화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자주 관리 아래 둔다. 둘째, 모든 시민에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접근권과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인터넷 등을 수단으로 하여 공적 소통에 참여할 기회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화,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를 극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등한 주체의 소통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2.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으며 소수자와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차이의 인정이 요구된다. 배제 없는 통합은 평등과 동일성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 동일성은 평등을 빌미로 한 배제로 귀착된다. 차이의 인정은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등의 문

화적 측면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 문화적·성적·신체적 정체성의 다양성과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만이 배제를 극복한다. 이러한 관점은 성 인지 정책, 장애 인지 정책, 문화 다양성 인지 정책 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인종 차별은 금지되고 이주자에게도 지역사회에서의 참정권을 인정한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국가로의 전환을 통하여 이주자도 대등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소수자나 약자의 문제에서 차이의 인정만으로 배제 없는 통합이 달성될 수는 없다. 차이의 인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소수자나 약자에게 더 많은 우선권을 부여하는 적극적 시정 조치도 각종 층위에서 도입해야 한다. 적극적 시정 조치처럼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차이가 차별을 낳지 못하게 하는 각종 제도는 차이를 위한 차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 방식, 새로운 일반성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시민사회에서의 탈배제 전략은 차이를 인정하는 동일성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소수자와 약자 우선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두 원리는 배제 없는 통합을 위한 상호 보완적 원리일 뿐이다. 이 점은 여성권 신장을 위해 두 원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기에 결코 소수자일 수 없으나 부가장제 사회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돌봄 노동이나 가사 노동의 가족 내 분담과 사회화, 동등한 기회의 제공,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성 평등 등에서 평등 원리를 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 할당제나 성 인지 정책, 적극적 시정 조치 등을 통해 차이의 인정과 약자 우선의 원칙을 실현할 때 여성권이 가장 많이 신장한다.

## V. [생태 사회로의 전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생태 사회

한국 사회에서 ‘토건국가’는 산업적 근대화의 극단이었던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오늘날의 신개발주의도 이 연장선에 있으며 환경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거짓 포장 아래 여전히 개발의 포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 사업들 탓에 국토는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민총생산 대비 에너지 사용량, 가장 낮은 에너지 효율성, 국토 환경에 걸리는 환경오염 부하량(負荷量)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토건주의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헐벗게 하고 생태적으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사회로 내몰기 전에 생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 지구적 환경 위기도 산업적 근대화를 넘어서는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의 수행이 요구된다.

첫째,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현재의 중앙집중적 방식의 에너지 체계를 다양한 대안 체계로 전환한다. 이른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빌미로 하여 핵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핵 발전은 대안이 아니며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다. 핵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탈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자원 순환형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근간으로 생태주의적 순환 경제구조를 수립한다. 특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강화하여 생산자, 수입업자, 대규모 판매업자가 생산 제품 전량에 대해 수거 의무를 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 비율도 높인다.

셋째, 90% 이상의 국민이 사는 도시 공간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한다. 생태 도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지 공간 확충, 대기 오염 개선, 녹색 교통 체계 구축, 생태 축 확보, 생태 복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도시 공간의 재구성은 정부나 전문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 도시로 전환하는 도시 정비 사업은 생태 환경적 가치, 세입자나 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 시민 대중의 참여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른다.

넷째,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 농업 체계를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생태 환경을 단순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근대국가로부터 생태 국가로 전환한다. 국가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가는 자연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개별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도 진다. 개별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 소송에서 집단소송제나 대리소송제를 폭넓게 인정한다. 나아가 생태 국가는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적용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생태적 목표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가는 과학·기술이 생태의 파괴가 아니라 복원의 수단이 되게 하고 생태적인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수립에 기여하게 한다.

## VI. [평화 강령] 비핵·평화 체제의 수립과 평화 국가로의 전환

1. 정전협정 체제인 1953년 체제를 비핵·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동북아시아에 다자간 안전보장 체제를 수립한다.

첫째, 동북아시아의 비핵·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정전협정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 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로 틀을 확장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는 핵무기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관계의 대립을 축으로 여전히 불안정하다.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비핵·평화 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핵무장국은 역내 국가에 대한 핵사용의 영구 포기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상호 핵군축을 통해 핵무기 폐기로 나아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 아래 북한의 핵무장 포기는 한국, 일본, 대만의 핵개발 포기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아울러 시민사회의 평화 역량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토 국가 측면에서 대외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분단 대결 체제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한반도 일국론(一國論)의 관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한반도에 수립된 두 국가의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목표이나, 통일은 국가와 반국가단체의 통일일 수 없고 언제나 국가와 국가의 통일일 뿐이다. 한반도에 이미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된 현실에서 두 국가의 관계는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국가 대 국가 관계이어야 하며, 양국은 분단 대결 상태를 영구히 종식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출발점이고, 평화 체제 없는 통일은 두 국가 국민 모두에게 재앙일 따름이다.

### 2. 평화 국가로의 전환

평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군비를 축소하고 국외 파병을 금지한다. 군사 대결이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수교와 관계 정상화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군비축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장병력의 국외 파병을 막는 「파병규제법」(가칭)을 제정하여 베트남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 평화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군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군비축소, 국외 파병 금지 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평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필

수적인 요건이다. 대체 복무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상적인 헌법 국가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 부속 강령 (1)

2009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강령의 정신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를 부속 강령 (1)로 채택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기본소득은 경제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자산 심사도 없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균등 지급된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생계유지에 충분한 액수이고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다. 기본소득은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기본복지와 함께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는 대안이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 경제의 핵심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국가사회와 정치에서의 배제를 극복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동성과 사회 공공성이 보장되는 국민 모두의 나라, 곧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이다.

경제사회와 국가사회 영역에서의 배제를 극복하는 운동에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보편적 복지의 확립이 가지는 핵심적 의의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를 부속 강령으로 채택한다.

### 1. 배제 없는 경제

자산 소유자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소득은 언제나 노동과 연계된다.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사회, 하지만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불안정한 사회,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고용으로부터의 배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 되면 비록 임금노동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었거나 고용이 불안정하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하지 않게 된다. 기본소득은 비자발적 실업자,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사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그 밖에 수많은 ‘그림자 노동’ 종사자, 신용 불량자, 노숙인, 빈곤 노인 등을 경제사회에서 배제하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완전고용이 가능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다. 이런 방식의 완전고용은 노동 빈곤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해지는 상태일 것이다. 성장하면 할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고용 축소를 막을 수 없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노동 유연화에 대응하는 최소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지나친 낙관이다. 오직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를 전제할 때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재편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에서 노동 연계 복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며 징벌이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없다면,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기본복지 강화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일자리도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질 나쁜 일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날이 갈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부여하지만, 노동과 생산으로부터의 배제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와 같은 배제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은 고용 창출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완전고용 사회로의 복귀는 시대를 전환하는 대안일 수 없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일자리를 늘려 완전고용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경제

적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는 실현 불가능한 가상(假想)이고, 하나는 배제 없는 경제를 수립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나는 임금노동에 근거한 낡은 사회의 최대 이상(理想)이었고,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는 현재 사회에서 임금노동으로부터 해방된 미래 사회로 넘어가는 전환의 대안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생산 영역으로부터 대중의 배제를 인정한 채 소비 영역에 의한 재통합만을 꾀하는 소극적 대안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액수가 기본소득으로서 지급되면,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굳이 무리하게 잔업, 철야, 특근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비자발적 노동이나 과잉 노동도 감소하며, 노동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진다. 과잉 노동이 감소하여 일자리 수요도 늘어난다. 그러면 고용도 증대할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개별적인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교섭력을 높여 임금과 노동조건 교섭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사회를 혁신한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사회를 더 인간화하고 노동자에게 더욱 유리한 교섭 조건을 창출하며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통해 고용도 창출한다.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경제사회에 통합하여 배제 없는 경제를 만들며 임금노동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배제도 완화한다. 모든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배제 없는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2.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약자에 대한 연대에서 평등한 권리로!

한국에서 기존의 복지는 빈곤한 사람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에 대한 선별적 복지였고, 시혜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혜자라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했고 하루빨리 그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날이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복지는 당사자에게 사실상의 징벌이었다. 아울러 한국에서 기존의 복지는 노동 연계성을 전제한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에 지나지 않았다. 복지는 국민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최저 보장이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선별적, 시혜적, 잔여적 복지는 또한 많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었다. 복지 확대는 더 많은 조세 부담을 뜻할 뿐이었다. 복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시혜이고, 따라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충적인 의의가 있을 뿐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체험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은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이익에 대한 경험만으로 권리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기본복지의 향상도 자동으로 권리 의식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단지 수혜층의 확산과 복지 체험의 확산만 이루어질 뿐이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권리 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의식은 복지가 수혜가 아니라 권리의 체계로 수립될 때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의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에서의 선별주의를 극복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에서의 선별주의는 복지 요건을 선별하고 제한하여 당사자의 특수한 처지에 따라서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시혜적 선별주의는 노동 연계성을 전제하며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을 훼손한다. 사회연대성에 입각한 선별주의는 선별 복지 체계를 유지한 채 시혜성만을 제거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는 처지가 어려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좀 더 처지가 나은 사회 구성원의 연대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혜이건 연대이건 선별주의는 복지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권리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모든 종류의 선별주의에는 17세기 초 영국의 구빈법(救貧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 은폐되어 있다. 처지가 나쁜 사회 구성원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건, 연대하는 일이건, 선별주의는 복지 체계를 시

장에 대한 보완으로서만 사고하게 한다. 설령 선별 복지 체계에서 복지 지출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복지의 보충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자산 여부나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가난하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개인의 특수한 처지 때문에 국가와 공동체가 베풀어주는 시혜도 아니고, 처지가 나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연대도 아니다. 기본소득은 자산이 있건 없건 노동을 하건 안 하건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관점, 곧 사회 구성원 또는 국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근거를 둔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복지의 요건은 가난, 질병, 무능력 등과 같은 특수한 처지로부터 사람, 사회 구성원, 국민 같은 보편적 자격으로 바뀌게 된다. 기본소득은 개별 사회 구성원의 특수한 처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처럼 오직 국민 또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보편적인 자격에 근거를 둔 복지이다. 따라서 사회연대성에 근거를 둔 선별주의 복지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 복지는 원리부터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복지 재원을 어떻게 얼마나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전의 차이, 사회 구성원의 배제 없는 통합에 대한 관점의 차이, 곧 두 입장에 표현된 사회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기본소득은 선별주의 복지를 보편주의 복지로 전환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약자에 대한 연대를 넘어 평등한 권리에 근거해 만인의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렛대이다.

정치적 국민주권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평등한 선거권을 가진다. 기본소득도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기본소득은 재산 정도나 노동 여부 등 어떤 특수한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사회 구성원이라는 평등한 자격에만 근거를 두고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복지의 요체가 복지 원리와 민주주의·국민주권 원리의 상동성(相同性)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복지의 국민주권적 차원을 연다. 복지는 이제 보충적인 체계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전제 조건이 되며, 무조건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 정당성의 조건이 된다.

### 3.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공화국을!

진정한 국민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한 소득을 얻으며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기본복지가 보장될 때, 국민주권은 비로소 실질적이게 된다. 이때 모든 국민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며 비로소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자일 수 있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출발점이고, 정치적 국가의 존립 조건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기본소득과 기본복지를 통해 국민 공통성이 확립된 사회적 공화국만이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다.

사회적 공화국에서 복지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수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동등한 권리이다. 사회적 공화국은 수혜의 보편성에 근거를 둔 사회국가가 아니라, 권리의 동등성에 근거를 둔 사회국가, 만인의 사회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만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사회국가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권리의 동등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수혜를 넘어 동등한 보편 권리를 지향하며, 복지와 민주주의·평등의 상동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는 운동의 핵심 과제이다.

### 4.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규제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시장화하고,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사영화하여 공공의 것을 수탈해 왔다. 이와 같은 특혜 경제와 수탈 경제는 기본소득과 의료·교육·주거·보육·노후에서의 기본복지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사회적 기본권 체계로 수립될 때만 해소될 것이다. 투기 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자·배당·지대에 대한 중과세는 턱 없이 낮은 현행 세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형성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체계 수립이 복지의 시장화 이전에 원래 공공의 것이었던 복지를 다시 공공의 것으로 되돌리는 행위라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재원 충당 방식은 금융 수탈에 대한 역수탈(逆收奪)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조세와 재정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제어하며 또한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낳는다. 이는 금융 공공성에 입각한 통제 및 사회화 정책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를 극복하는 두 종류의 중요 수단이 될 것이다.

#### 5. 기본소득은 서민 중심의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여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이룩한다.

복지와 성장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복지는 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목표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복지 없는 성장은 불균등과 불평등을 심화한다. 바로 그와 같은 불균등과 불평등이 성장의 한계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복지를 통한 성장만이 대안이다. 복지는 더 이상 성장의 후유증인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소극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비를 극복하고 내수를 확충하며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게 한다. 물론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처럼 대규모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부터 즉각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총경제성장률과 내수 성장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로 불균형이 시정되고, 단기적으로는 총경제성장률에 조용하는 내수 성장률의 비약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울러 내수 성장이 관건으로 떠오른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위기 해소의 방법이 된다. 현재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위기는 금융중심국과 상품수출국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도록 강제한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세계시장에 추가 공급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국이 내수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왔다. 이런 방식의 세계경제 질서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재정 확대를 지속하는 동안 한국과 같은 국가는 당분간 수출 호조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런 방식으로 더는 내수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내수 위기뿐 아니라 수출의 위기도 닥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무역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형태로의 단계적인 전환은 시급한 과제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수요 중심 경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서민들의 생필품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중소 내수 기업을 위한 시장이 형성된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기업 간 격차가 임금 격차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어 온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기본소득은 서민 중심의 내수 성장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 6. 기본소득은 사회적 경제의 기초이며 경제구조 고도화에 기여한다.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 등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 즉 불불(不拂) 노동이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런 여러 종류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협동조합이나 공동소유형 기업에서의 노동처럼 임금노동 형태로 수행되지 않는 자발적 노동에 사회적 기초를 부여한다. 노동의 사회적 형태와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안에서 비자본

주의적인 사회적 경제의 기초를 형성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노동의 질적 변화도 촉진한다. 충분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창의적인 ‘지식 기반 노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교육·훈련의 체계와 연구·개발의 체계는 산업·생산 체계와 대등한 정도의 독자적 체계가 될 것이며, 훈련비와 연구비의 지급은 임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여겨질 것이다. 생산적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완화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이와 같은 전환의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다.

## 7. ‘임금노동의 사회’를 넘어 모두의 일이 인정받는 ‘사회적 필요 활동의 사회’로!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대중의 소득 불안정을 극복하는 것이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동시에 가장 전환적인 해법일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해방적 의의는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와 관계된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비자발적 실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동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임금노동의 틀 밖에서 노동의 사회적 형태가 수립되면 임금노동으로부터의 배제는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환이야말로 완전고용 사회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전환일 것이다. 고용 불안정이 소득 불안정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도리어 기본소득의 소극적 의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동의 확대를 통해 임금노동 사회를 넘어서는 길을 열어젖힌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로 속에서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의 사회를 넘어 모두의 일이 인정받는 사회적 필요 활동의 사회로 나아가는 적극적 전환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 청년진보당-사회당 강령 개정의 역사와 2009년 강령의 의의[부록]

2009년 11월 29일에 개정된 강령의 정신에 따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를 부속 강령 (1)로 채택한다.

사회당의 전신(前身)인 청년진보당은 1998년 11월 29일 창당했다. 청년진보당은 2001년 8월 제3차 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사회당으로 변경했으나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 후 사회당은 2003년 5월 11일, 2006년 10월 29일, 2009년 11월 29일 등 세 번에 걸쳐 강령을 개정한다. 2003년과 2006년의 개정은 강령의 성격과 틀에 있어서 전부 개정해 해당하며, 2009년 개정은 2006년 강령과 그 성격과 틀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일부 개정해 해당된다.

#### 1. 청년진보당 강령

청년진보당은 노동, 정치, 대외 관계, 한반도, 차별 철폐, 복지, 생태 등의 분야의 7대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 강령’을 채택했다. 또한 강령의 의의, 구성, 기본정신을 밝힌 머리글에서 청년진보당은 강령을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방향과 계획”이라 정의했다. 즉 청년진보당은 강령의 위상과 역할을 현존 사회의 문제를 해명하고 극복의 대안을 제출함으로써 전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와 같은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는 강령은 단순한 선언일 수 없다. 그것은 당대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담은 ‘대안 강령’이어야 한다. 강령의 성격, 위상,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은 청년진보당-사회당 강령의 발전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강령의 머리글은 이와 같은 발전에 발맞추어 청년진보당도 장차 ‘대안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98년 청년진보당 강령이 “전체를 포괄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했다면, 그 이후 2006년과 2009년의 사회당 강령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부단한 실천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청년진보당은 “대안사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공백이 있음을 인정하며

“부단한 실천을 통해 이념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회당의 2003년 강령은 이와 같은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진보당의 7대 실천 강령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차별 철폐와 복지 분야이다. 차별 철폐 강령은 청년진보당-사회당이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운동 등에 앞장서게 하는 정신적 출발점이 되었고, 2009년 강령에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으며 소수자와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사회”의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집약되어 표현된다. 특기할 점은 청년진보당이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전면적·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해설에서 이미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강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대안으로서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2009년 강령에 등장하는 기본소득의 맹아는 이미 청년진보당 강령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청년진보당은 강령 해설에서 “복지는 성장의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이 점도 “복지를 통한 성장”이라는 사회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2. 청년진보당 강령부터 사회당 2003년 강령까지

청년진보당은 “강령이 현실운동을 이끌 수도 있지만, 현실의 강력한 운동이 제대로 된 강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힌다. 이는 청년진보당이 7대 실천 강령만으로도 능히 창당할 수 있었던 “기본 정신”이었다. 아울러 2001년 8월, 사회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음에도 강령은 그대로였던 이유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청년진보당 강령의 머릿글에 나타나듯이 사회당의 당명에 걸맞도록 “모자란 것은 앞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기백”과 “대안 사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연대의 정신”을 따른 것이었다. 2001년 당명 개정 이후 사회당은 20세기의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평등한 연대”,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했다. 이와 같은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2003년 5월 11일 새로운 강령의 형태로 자신의 표현을 얻는다. 아울러 대중정당화를 위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노력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지만, 2003년 강령은 사회당이 추구하는 당의 형태를 “사회주의 대중정당”이라 밝힘으로써 대중정당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선언한다.

2003년 강령은 2001년 당명 개정 이후 2년간의 사회당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반영한다. 강령은 20세기의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넘어서서 생태적이며, 평화적이고, 자치적이며, 연대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함을 밝힌다. 이와 같이 분명한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2003년 강령은 ‘이념 강령’이자 ‘가치 강령’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념과 지향은 아직 추상적이었다. 2003년 강령은 구체적인 시대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자본의 시대를 넘어”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시대 규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2003년 강령이 밝히고 있는 목표인 새로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경로와 대안도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 부분에서는 오직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2003년 강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이념-가치 강령’이지만 아직 ‘선언 강령’ 또는 ‘의지 강령’의 형태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령의 본문(本文)은 각 분야에 걸친 30대 ‘요구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령 전문(前文)에서 제시된 이념 및 가치 지향과 유기적 연관을 이루지 못했고 각 분야의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었다.

## 3. 2003년 강령부터 2006년 강령까지의 발전과 2006년 강령의 의의

2003년 5월 11일 강령 개정부터 2006년 10월 29일 또 한 번의 강령 개정까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다. 사회당은 이 기간의 활동을 통하여 2003년 강령에서 말한 ‘대중정당’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당은 자신의 가치 지향을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

상”으로 즐겨 표현했으며 “가장 차별받고 가장 배제된 사람들과 가장 먼저 연대”하는 ‘연대 정당’으로 자신을 규정했다. 2006년 강령은 이와 같은 실천 상의 발전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대 규정이나 경로와 대안의 문제에 있어서 2003년 강령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강령은 자본주의사회의 구성 원리를 “배제적 통합”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원리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 관철되는 방식을 주목한다. 즉 2006년 강령은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경제발전이 더욱더 많은 국민 대중을 주권의 실질적 행사로부터 배제”해 왔으며 “한국 자본주의는 더 많은 배제를 향한 운동만을 가속화”해 왔다고 당면한 시대를 규정한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2006년 강령은 자본주의사회 일반의 “배제적 통합”을 극복하는 “탈배제 운동”을 통해 일체의 배제 없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 곧 “배제 없는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사회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밝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본적인 “탈배제 운동”은 동시에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에서의 운동이어야 한다. 그래서 2006년 강령은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통해 생산된 “더 많은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배제 강령’으로 제시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6년 강령은 ‘대안 강령’의 성격을 가진다. 2006년 강령의 의의는 “배제 없는 사회”라는 대안 사회의 원칙과 현실에서 구체적인 배제를 극복해 나가는 운동을 일원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당면 시대에서 구체적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궁극적인 목표인 “배제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와 수단으로서 서술되며, 아울러 목표와 수단은 배제 극복을 위한 운동 속에서 통일되어 서술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2003년 강령에 나타난 경로에 대한 입장을 다르지 않다. 2003년 강령도 “대안 사회의 맹아”들은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경로가 아직 ‘대안 강령’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 4. 2009년 강령 개정의 의의

2006년 강령의 본문은 “주권의 실질적 행사로부터 배제”의 극복, “경제사회로부터 다수 대중의 배제 극복”, “교육과 지식으로부터의 배제 및 문화적 배제의 극복” 등을 중심으로 국가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에 걸친 3대 ‘탈배제 강령’과 ‘평화 강령’ 및 ‘생태 강령’의 5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평화 강령’은 동북아 비핵평화체제의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체제론’과 대체복무제와 군비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국가론’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생태 강령’은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밝히는 부분과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9년 강령은 시대 과제와 극복의 대안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대안 강령’이며, 경제사회 · 국가사회 · 시민사회의 3대 영역에 걸친 ‘탈배제 강령’이며, 여기에 ‘평화 강령’과 ‘생태 강령’을 덧붙여 5대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2006년 강령과 그 성격과 편성 체계를 같이 한다. 그래서 2009년 강령은 2006년 강령이 비록 ‘대안 강령’이기는 하나 극히 추상적이었던 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체화와 풍부화 이외에도 2009년 강령은 2006년 강령에 비교할 때 분명한 변화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령 전문의 시대 규정과 핵심 과제에 대한 서술이 바뀌었다.

2006년 강령은 당면 시기의 ‘탈배제운동’의 핵심 과제를 밝히고 있는 전문에서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 국가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공화국”을 중요 대안으로 제출한다. “사회적 공화국”은 1997년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타난다. 전문에 이어지는 본문

의 서술도 “국가사회와 정치에서의 탈배제”에서 시작된다. 반면에 2009년 강령은 2008년 이후의 세계경제 위기를 반영하여 더욱 구체적이며 전 지구적인 시대 규정으로부터 출발한다. 2009년 강령의 전문은 이 시대가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생태 위기, 평화 위기라는 위기 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전환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본문 서술의 출발점도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대안 경제”이다. 경제 강령은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의 극복을 위한 ‘규제 · 사회화 강령’을 한 부분으로 하고, “배제 없는 경제”를 목표로 하는 ‘복지 · 노동 강령’을 다른 한 부분으로 하여 구성된다. “배제 없는 경제” 부분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의료 · 교육 · 주거 · 보육 · 노후 영역에서의 기본복지는 ‘사회적 공화국’의 전제 조건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 강령’과 ‘정치 강령’은 수미일관하게 연관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9년 강령은 신자유주의 위기 시대의 ‘포괄적인 대안 강령’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09년 강령의 의의는 청년진보당 강령에서 주장한 “노동으로부터 독립된 전면적 · 보편적 복지”를 일체의 심사 없고 노동 강요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이를 완전고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시대에서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배제 극복의 대안으로 제출한 점에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5. 2009년 강령의 발전 방향

2009년 11월 29일은 강령을 개정 한 날일뿐만 아니라 개정된 강령에 따른 「부속 강령(1)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를 채택한 날이기도 하다. 2009년 강령의 발전 방향은 강령 본문의 정신을 구체화하거나 본문에서 제출된 개별 대안의 의의와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 주는 여러 부속 강령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속 강령(1)」에 이어서 민주주의 강령, 사회화 강령,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강령 등이 앞으로 부속 강령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후에 2009년 강령이 파악하고 있는 시대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더 많은 규정들의 보충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면, 부속 강령의 제정이 아니라 본 강령의 개정도 열려진 가능성이 있다. 시대 규정에 충실한 구체화는 사회당 강령이 당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대안 강령’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과제이며, 이 과제를 우회하고서 한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 정당’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 부속 강령 (1)\_English

According to the platform revision of November 29 2009, we hereby adopt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as Addendum One.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Basic income is an income provided to all members of the economic society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The amount of basic income may be sufficient for livelihood and be regularly renewed considering inflation. Basic income is a solution to overcome economic exclusion of people along with basic welfare which is provided in the form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fields of medical care, education, residence, childcare, and aged care. Being the core of progressive alternative economy that surmounts neoliberalism, basic income is also the key of a new democracy movement to form the social republic – an all people's republic that ensures the socioeconomic commonness and social community by eliminating exclusion in state society and politics.

To further clarify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basic income and universal welfare in the movement of eliminating exclusion in economic and state society, we hereby adopt Basic Income for All and Universal Welfare as Addendum One.

## **1. Economy of No Exclusion**

All people, except those of substance, obtain income by labor. In a society where nobody can even survive without labor, while jobs are always insufficient and unstable yet full employment is not possible, basic income is the only way to counteract exclusion from employment. A sufficient basic income provides living costs even for those who are excluded from the opportunity of wage labor or when the employment is unstable. Basic income is the only alternative that does not exclude unwillingly unemployed people, contractors of unstable employment, house workers and caring workers, all kinds of 'shadow labor' workers, delinquent debtors, homeless people, and senior citizens in poverty, from economic society.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the wage with which full employment is possible is even lower than the legal minimum wage. Full employment accomplished this way shall only contribute to even more miserable conditions for the working poor. Economic growth only reduces employment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hence no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all prevent the decrease of employment. Expecti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fight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e the minimum stability is, also, overly optimistic. Only with basic income and basic welfare,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all achieve the original goal to prepare for the advance of economic structure and industrial reorganization. Furthermore, in a society of insufficient jobs, work fare is a stigma and punishment for those who are unwillingly unemployed. Without sufficient basic income, even social jobs that shall be created in the fields of medical care, education, residence, childcare, and aged care by strengthening basic welfare are no more than low-quality jobs that cannot sustain livelihood.

As is shown, basic income is the only alternative that dissolves the economic exclusion of people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in which employment gradually decreases. Basic income does grant income to the unemployed, but it does not go far enough to completely remove the exclusion from labor and production. The only way to directly remove that kind of exclusion is to create jobs. However, returning to the dream of full employment society cannot be an answer in the age of transition. Whether to create a fully-employed society by creating more jobs or to implement basic income that shall bring a society without economic exclusion is not a matter of choice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The former is an unachievable illusion, while the latter is a realistic alternative to establish an economy without exclusion. The former was the maximum ideal of the obsolete regime based on wage labor, while the latter is an alternative transition model to shift from the current job-decreasing society to the future society liberated from wage labor.

As is shown, basic income is the only alternative that dissolves the economic exclusion of people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in which employment gradually decreases. Basic income does grant income to the unemployed, but it does not go far enough to completely remove the exclusion from labor and production. The only way to directly remove that kind of exclusion is to create jobs. However, returning to the dream of full employment society cannot be an answer in the age of transition. Whether to create a fully-employed society by creating more jobs or to implement basic income that shall bring a society without economic exclusion is not a matter of choice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The former is an unachievable illusion, while the latter is a realistic alternative to establish an economy without exclusion. The former was the maximum ideal of the obsolete regime based on wage labor, while the latter is an alternative transition model to shift from the current job-decreasing society to the future society liberated from wage labor.

## **2.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from charitable solidarity to Equal Right**

Welfare has always been selective In South Korea, provided only for those who are unemployed or in poverty, always being a form of institutionalized pitying. The recipients have been supposed to be ashamed to be receiving, feeling obligated to escape such status as soon as possible. In the society of wealth polarizing and bearable jobs diminishing, such welfare has virtually been a punishment. The current system is also supplementary and residual, built on the requirement that the recipient must show willingness to work whenever possible. Welfare was never a universal security for everyone but the bare minimum to prevent the bad news of death by starvation. Such selective, pitying, residual welfare brought negative recognition of welfare among the lower and middle class. Expansion of welfare only meant more burden of taxation. That welfare is not a deserved right but a national charity, and is only meaningful as a supplementary social security net, became the dominant perception of welfare.

The desire and consciousness of welfare cannot develop in a society where the lower and middle class has almost no experience of welfare. However, it does not follow that an experience of benefit shall automatically cause the consciousness. Gradual and phased enhancement of basic welfare in the fields of medical care, education, residence, childcare, and aged care does not instantly bring the development of consciousness either. It is no more than an extended recipient group and more experiences of welfare. Universal welfare of everyone is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universal right. Such consciousness shall only be universal when welfare is established not as a charity but as a system of right. To overcome the selective perspective in welfare is a prerequisite for this.

Selective approaches to welfare set the requisites and limitations to receive welfare and provide benefits only for the specific situation of each recipient. The selective approach based on pity requires the recipient to have willingness to work which severely damages the concept of welfare as a right. On the other hand, the selective approach based on social solidarity attempts to remove the aspect of welfare as a pity while maintaining the selective nature itself. In this approach, welfare is understood as an assistance to the less privileged members of society by the more privileged. Whatever the philosophical basis is, selective approach is always greatly limited since in those approaches welfare cannot be understood as an everyone's equal right. All kinds of selective approach conceals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welfare that originates from the 17th century's English Poor Laws. It may be pitying the unprivileged people or solidarizing with them, but whatever it truly is it always involves the way of thinking that regards welfare as a supplement to market. However much money is increased for welfare under the selective welfare system, the supplementary nature of welfare remains.

Basic income is provided to everyone individually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Basic income is neither a charity from the state society for pitiful individual situation, nor a social solidarity to an unprivileged members of society. Basic income is a basic right founded on a perspective that regardless of assets or working status, everyone equally constitutes the society therefore everyone deserves.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changes the precondition of welfare from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poverty, disease, or inability to universal qualifications such as being human, being a member of society, or being citizen. Exactly like the way democracy works, basic income does not require special circumstances of each member but demands a general qualification of simply being a citizen. Thus selective welfare based on the concept social solidarity and universal welfare centering on basic income are different at a fundamental level. Such difference is not only a difference of how to raise how much fund but a difference of perspective on integration of citizens, hence a radical difference of social philosophy represented in each standpoint. Therefore basic income is the trigger to surpass the solidarity point of view and to advance to the true integration of everyone based on an equal right.

The political doctrine of democratic sovereignty i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Rich or poor, everybody shares equal suffrage. Basic income i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oo.

The same amount of income is provided to all individuals, demanding a single equal qualification, that is, being citizen, without any evaluation of special 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Basic income clearly shows that the essence of universal welfare is the mutual equivalence of the welfare mechanism and the democracy mechanism. Basic income installs universal welfare as a part of democratic sovereignty. Welfare is no longer a supplement but a precondition for democracy, a requisite for a legitimacy of nation that must be satisfied unconditionally

### **3. Social Republic by Basic Income and Universal Welfare**

A genuinely democratic sovereignty cannot be implemented only by granting everyone suffrage and electoral eligibility. The concept of democratic sovereignty can be considered actually implemented only when everyone can live a standard level of life, gaining sufficient income, with guaranteed basic welfare in medical care, education, residence, childcare, and aged care. Under such circumstances, all people finally acquire the prerequisites to exert sovereignty and become the true sovereign of the republic. Universal welfare including basic income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truly democratic sovereignty. It offers the existential basis for a political state, and constitutes the minimum precondition to advance to a better society. Only a social republic of people's commonness established by basic income and basic welfare is truly a democratic republic.

In a social republic, welfare is not a universal benefit of all people but an equal right of all people. A social republic is not a social state based on the universality of benefit but a social state based on the equality of right – a dynamic social state built on the social commonness of everyone where everyone participates. Basic income most clearly shows such equality of right. Basic income orients to the equal universal right, exposing the mutual equivalence of democracy, equality and welfare. Implementing basic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the movement to establish the social republic.

### **4. Restrict Neoliberalist Expropriation Economy by Heavy Taxation on Exploitative Speculation and Unearned Income for Financing Basic Income**

Neoliberalism has expropriated the public by marketizing welfare and privatizing public goods. Such preferential economy and expropriation economy can be incapacitated only by establishing basic income and basic welfare of medical care, education, residence, childcare, and aged care as inviolable social basic rights. Financial source of basic income and basic welfare is to be a heavy taxation on income earned by exploitative speculation and unearned revenue. Heavy taxation on interest, dividend, and ground rent is to raise the current tax rate which is ridiculously low to the average level of OECD and to finance universal welfare. As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welfare is to recapture welfare which was public before the marketization, the financing of basic income and basic welfare is an anti-expropriation program against the financial expropriation. Taxation and fiscal policy to implement basic income controls the neoliberalist expropriation economy and involves a strong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addition. Along with the control and socialization policy found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community, such taxation shall be one of two major means to fight the neoliberalist expropriation economy.

### **5. Basic Income Activates Domestic Economy and Thus Facilitates Joint Growth of Exportation and Domestic Consumption.**

The relation of welfare and economic growth must be reset from a perspective that welfare is not a by-product of growth but an independent goal. Growth without welfare constantly intensifies



unevenness and inequality, but when such unevenness and inequality is the very cause of suspended growth, the only solution is growth through welfare. Welfare is no longer a treatment to ease the negative aftermath of growth but a precondition of growth. Especially basic income dissolves the underconsumption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spurs domestic consumption, enabling the joint growth of exportation and domestic consumption. South Korea, which does not own a large scale of domestic market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Europe, China, India, Brazil, or Russia, obviously cannot abandon the exports-oriented model of economic growth immediately. Hence the joint growth of exportation and domestic consumption means that, in the long term, the imbalance between the growth rate of domestic consumption and the rate of economic growth is corrected and, in the short term, the rapid growth of domestic consumption overtakes the gross economic growth. Basic income is effective in achieving such goal.

Also in the perilous global economic situation where domestic consumption became the vital key, basic income is a method of resolving crisis. The current unprecedented crisis of global economy forces to reset the relation of the financial hubs and the exports-orien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pplied additional dollar to the global market letting the exporters maintain the domestic market despite the enormous deficit in trading and budget. The order of global market in this way is in a trouble so deep that a radical change is unavoidable. Whil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or Japan are injecting public funds into the market and expanding fiscal spending, the exporter states such as South Korea may keep its records in exportation. However, when those countries can no longer maintain domestic markets in that way, the exporters shall face crisis both in exportation and in their domestic markets. Therefore, even if to reduce reliance on trade at once is impossible, a phased transition to the joint growth model of exportation and domestic consumption is urgent.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means a gradual transition toward the demand side economy.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solves the long-lasting problem of South Korean economy which is the aggravation of imbalance between exportation and domestic consumption that results in a gap between rich and poor corporations which causes wage differential and social polarization. Basic income lays the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domestic consumption centered by lower and middle class.

## **6. Basic Income Is Foundation of Social Economy and Contributes to Advance of Economic Structure**

Labors including house labor and caring labor that are not in an employment relationship are unpaid yet socially significant. Implementing basic income means a social acknowledgement of these activities. Additionally,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socially bases voluntary labors as in co-ops or jointly owned corporations that are not performed in the form of wage labor. By changing the social form and nature of labor, basic income bases a non-capitalist social economy inside capitalism. Furthermore, basic income promotes the qualitative change of labor. A sufficient amount of basic income promotes the transition to a creative 'knowledge-based labor' and contributes to the advance of economic structure. The transition to knowledge-based society shall involve the change in the overall structure of society. The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the system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hall become an independent system on the level of industry and production, making training and research costs regarded as wage. Basic income which loosens the connection between labor for production and income is the basis and precondition for such transition.

## **7. Beyond Society of Wage Labor to Society of Socially Demanded Activity where Everyone's Work Is Appreciated**

The most important task in the age of unstable employment is certainly to mitigate the instability of people's income, and basic income is the most realistic yet the most innovative solution for such task. However, the significance of basic income as a liberating program is related to a far more radical change of society.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implies the transition from being unwillingly unemployed to independent, voluntary, and creative labor. Once a social form of labor is established out of the wage labor frame, being excluded from wage labor may mean being liberated from wage labor. Such transition is much more progressive than accomplishing a fully employed society. It is rather of a minor significance that unstable employment shall no longer mean unstable income: Basic income opens a new road to proceed beyond the society of wage labor by expanding independent, voluntary, and creative labor. Within such path basic income comprehends the potential of active transition from the society of wage labor to a society of socially demanded activities where everyone's work is appreciated.

## 부속 강령 (1)\_Deutsch

Entsprechend der Änderung des Parteiprogramms vom 29 November 2009 verabschieden wir hiermit die Ergänzung Nr. 1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Das Grundeinkommen ist ein Einkommen, das alle Mitglieder der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 ohne Bedürftigkeitsprüfung und ohne die Bedingung einer Arbeitstätigkeit erhalten. Die Höhe des Grundeinkommens soll als Existenzgrundlage genügen und regelmäßig im Hinblick auf die Inflation angepasst werden. Zusammen mit einer Grundversorgung, die in Form von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in den Bereichen medizinische Versorgung, Bildung, Wohnen, Kinder- und Altenbetreuung bereitgestellt wird, stellt das Grundeinkommen eine Lösung für das Problem der wirtschaftlichen Ausgrenzung von Menschen dar. Das Grundeinkommen bildet das Kernelement einer fortschrittlichen alternativen Wirtschaft, mit der der Neoliberalismus überwunden wird. Gleichzeitig ist es auch der Schlüssel zu einer neuen Demokratiebewegung und zur Erschaffung der sozialen Republik – einer Republik für alle Menschen, in der sozioökonomische Gemeinsamkeit und sozial garantierte Gleichheit auf der Ebene Staat und Politik durch das Überwindung der Ausgrenzung sichergestellt sind.

Um zu verdeutlichen, welche Bedeutung die Einführung von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r Sozialfürsorge für die Bemühungen zum Beenden von Ausgrenzung in wirtschaftlicher und staatlicher Gesellschaft hat, verabschieden wir hiermit die Ergänzung Nr. 1 zum Parteiprogramm: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 **1. Eine Wirtschaft ohne Ausgrenzung**

Alle Menschen, mit Ausnahme der Vermögenden, erhalten Einkommen durch Arbeit. In einer Gesellschaft, in der niemand auch nur überleben kann, ohne zu arbeiten, es gleichzeitig aber nie ausreichend Stellen gibt, Beschäftigung unsicher ist und Vollbeschäftigung nicht erreicht werden kann, stellt das Grundeinkommen die einzige Möglichkeit dar, der Ausgrenzung aus dem Erwerbsleben entgegenzuwirken. Ein ausreichendes Grundeinkommen ermöglicht auch den von der Möglichkeit der Lohnarbeit Ausgeschlossenen und bei unsicherer Beschäftigung das Bestreiten der Lebenshaltungskosten. Es ist die einzige Alternative, mit deren Hilfe Menschen, die gegen ihren Willen arbeitslos sind, Vertragsarbeiter in instabiler Beschäftigung, Hausangestellte und im Bereich Betreuung Tätige, sämtliche Arten von „Schatten-Arbeitern“, säumige Schuldner, Obdachlose und in Armut lebende alte Menschen nicht von der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 ausgeschlossen

werden.

Alle Menschen, mit Ausnahme der Vermögenden, erhalten Einkommen durch Arbeit. In einer Gesellschaft, in der niemand auch nur überleben kann, ohne zu arbeiten, es gleichzeitig aber nie ausreichend Stellen gibt, Beschäftigung unsicher ist und Vollbeschäftigung nicht erreicht werden kann, stellt das Grundeinkommen die einzige Möglichkeit dar, der Ausgrenzung aus dem Erwerbsleben entgegenzuwirken. Ein ausreichendes Grundeinkommen ermöglicht auch den von der Möglichkeit der Lohnarbeit Ausgeschlossenen und bei unsicherer Beschäftigung das Bestreiten der Lebenshaltungskosten. Es ist die einzige Alternative, mit deren Hilfe Menschen, die gegen ihren Willen arbeitslos sind, Vertragsarbeiter in instabiler Beschäftigung, Hausangestellte und im Bereich Betreuung Tätige, sämtliche Arten von „Schatten-Arbeitern“, säumige Schuldner, Obdachlose und in Armut lebende alte Menschen nicht von der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 ausgeschlossen werden.

Wie dargelegt wurde, stellt das Grundeinkommen die einzige Alternative dar, mit der die wirtschaftliche Ausgrenzung von Menschen im heutigen Kapitalismus beendet werden kann, in dem die Beschäftigung immer weiter sinkt. Das Grundeinkommen sichert Arbeitslosen zwar ein Einkommen, reicht jedoch nicht aus, um die Ausgrenzung der Menschen von Arbeit und Produktion vollständig aus der Welt zu schaffen. Diese Art Ausgrenzung lässt sich unmittelbar nur durch die Schaffung von Stellen beenden. Im Zeitalter des Wandels kann die Rückkehr zum Traum einer Gesellschaft mit Vollbeschäftigung jedoch nicht die Antwort sein. Im heutigen Kapitalismus steht man deshalb nicht vor der Entscheidung, ob man eine Gesellschaft in Vollbeschäftigung verwirklicht, indem man mehr Arbeitsplätze schafft, oder ob man ein Grundeinkommen einführt, durch das eine Gesellschaft ohne wirtschaftliche Ausgrenzung entsteht. Ersteres ist eine Illusion, die sich nicht verwirklichen lässt, Letzteres dagegen eine realistische Möglichkeit, eine Gesellschaft ohne Ausgrenzung zu schaffen. Ersteres war das höchste Ideal des veralteten Systems, das auf Lohnarbeit aufbaut, während Letzteres ein alternatives Übergangsmodell für den Wandel von der derzeitigen Gesellschaft mit sinkender Beschäftigung hin zu einer künftigen, von Lohnarbeit befreiten Gesellschaft darstellt.

Das Grundeinkommen ist jedoch kein defensiver Lösungsvorschlag, bei dem Menschen nur im Hinblick auf den Konsum wieder in die Gesellschaft integriert werden, aber gleichzeitig außer Acht gelassen wird, dass nach wie vor Menschen von der Produktion ausgeschlossen sind. Vielmehr handelt es sich beim Grundeinkommen um eine Lösung zur Verbesserung der Lebensbedingungen von Lohnarbeitern und gleichzeitig um eine Strategie zur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Sobald ein Grundeinkommen zur Verfügung steht, mit dem sich der Lebensunterhalt bestreiten lässt, sinkt die Motivation der Arbeiter, gesundheitsgefährdende schwere Arbeit zu leisten. Auch unfreiwillige Arbeit und Überarbeitung werden abnehmen, sodass die Arbeitszeit sinken wird. Eine geringere Arbeitszeit durch das Grundeinkommen führt zur Aufteilung von Arbeitsplätzen. Mit abnehmender Überarbeitung steigt also das Angebot an Stellen. Zudem verleiht das Grundeinkommen den einzelnen Arbeitnehmern auf dem Arbeitsmarkt mehr Verhandlungsspielraum, sodass auch die Gewerkschaften mehr Spielraum erhalten, wodurch sich bessere Voraussetzungen bei den Verhandlungen über Löhne und Arbeitsbedingungen ergeben. Das Grundeinkommen sorgt also für Innovationen in der Lohnarbeitsgesellschaft: Die Lohnarbeitsgesellschaft wird menschlicher, die Arbeitnehmer erhalten mehr Handlungsspielraum, und durch den Effekt der Teilung von Arbeitsplätzen entstehen neue Stellen. Zudem werden durch das Grundeinkommen arbeitslose Menschen in die wirtschaftliche Gesellschaft integriert, und es entsteht eine Gesellschaft ohne Ausgrenzung. Gleichzeitig nimmt auch die Ausgrenzung ab, die in der Lohnarbeitsgesellschaft stattfindet. Egal, unter welchem Gesichtspunkt man es betrachtet – das Grundeinkommen ist die Voraussetzung für die Schaffung einer Wirtschaft ohne Ausgrenzung.

## **2. Von selektiver Sozialfürsorge zu allgemeiner Sozialfürsorge, von karitativer Solidarität mit sozial Schwachen zu Gleichberechtigung**

In Südkorea ist Sozialfürsorge seit jeher selektiv und nur für Arbeitslose und in Armut Lebende bestimmt, sodass es sich stets um eine Art institutionalisiertes Mitleid handelt. Die Leistungsempfänger sollen sich für den Erhalt der Mittel schämen und sich verpflichtet fühlen, sich so schnell wie möglich aus dieser Position zu befreien. In einer Gesellschaft der Polarisierung von Reichtum und Armut, in der erträgliche Arbeitsstellen immer seltener werden, kommt eine so gestaltete Sozialfürsorge geradezu einer Bestrafung gleich. Außerdem ist das gegenwärtige System nur ein ergänzendes Relikt und baut auf der Bedingung auf, dass Mittelempfänger bereit sind, zu arbeiten, wann immer dies möglich ist. Sozialfürsorge ist also nie eine allgemeine Sicherung für alle Menschen gewesen, sondern nur ein absolutes Minimum, damit Hiobsbotschaften über Fälle von Tod durch Verhungern vermieden werden können. Durch diese selektive, von Mitleid motivierte, residuale Sozialfürsorge bekam selbige in der unteren Schicht und der Mittelschicht ein negatives Ansehen. Eine Ausweitung der Sozialfürsorge bedeutete lediglich eine größere Steuerlast. Es wurde zur vorherrschenden Wahrnehmung, dass es sich bei Sozialfürsorge nicht um ein verdientes Recht, sondern um Wohltätigkeiten des Staates handelte, die nur als zusätzliches Netz der sozialen Sicherheit sinnvoll seien.

Ein Bewusstsein für und der Wunsch nach Sozialfürsorge können sich in einer Gesellschaft, in der die untere Schicht und die Mittelschicht diese praktisch nicht kennen, nicht entwickeln. Daraus folgt jedoch nicht, dass das Empfangen von Sozialleistungen automatisch zu einem solchen Bewusstsein führt. Auch eine allmähliche, in Phasen ablaufende Verbesserung der Grundversorgung in den Bereichen medizinische Versorgung, Bildung, Wohnen, Kinder- und Altenbetreuung führt nicht sofort dazu, dass sich ein solches Bewusstsein entwickelt. Hierdurch ergeben sich lediglich eine größere Gruppe von Mittelempfängern und mehr Erfahrungen mit Sozialfürsorge. Grundlage der allgemeinen Sozialfürsorge ist dagegen das Bewusstsein, dass es sich hierbei um ein universelles Recht handelt. Ein solches Bewusstsein wird nur dann in der Allgemeinheit entstehen, wenn Sozialfürsorge nicht als Wohltätigkeit, sondern als allgemeines Recht verstanden wird. Als Voraussetzung hierfür muss eine Loslösung von der selektiven Betrachtungsweise der Sozialfürsorge erfolgen.

Selektive Ansätze legen die Voraussetzungen und Einschränkungen für den Erhalt von Sozialfürsorge fest, und es werden nur jeweils für die besondere Situation des einzelnen Empfängers Leistungen bereitgestellt. Beim auf Mitleid aufbauenden selektiven Ansatz ist die Bereitschaft der Mittelempfänger, Arbeit anzunehmen, Voraussetzung, was dem Konzept vom subjektiven Recht auf Sozialfürsorge stark zuwiderläuft. Andererseits wird mit dem auf gesellschaftlicher Solidarität aufbauenden selektiven Ansatz versucht, den Aspekt von Sozialfürsorge als Mitleidshandlung zu überwinden, wobei jedoch gleichzeitig der selektive Charakter beibehalten wird. Bei diesem Ansatz werden Sozialleistungen als Unterstützung für die benachteiligten Mitglieder der Gesellschaft durch die Privilegierteren verstanden. Auf welcher Philosophie sie aber auch aufbauen, selektive Ansätze sind immer stark eingeschränkt, da Sozialfürsorge hier nicht als ein Recht verstanden werden kann, über das alle Menschen gleichermaßen verfügen. Hinter allen selektiven Ansätzen verbirgt sich jenes traditionelle Verständnis von Sozialfürsorge, das seinen Ursprung in den englischen „Poor Laws“ des 17. Jahrhunderts hat. Dieses mag von Mitleid bzw. Solidarität mit benachteiligten Menschen geprägt sein, aber wie auch immer es sich darstellt, Sozialfürsorge wird dabei stets als Ergänzung zum Markt betrachtet. Wie viel mehr Geld im Rahmen des selektiven Fürsorgesystems auch für die Sozialfürsorge aufgebracht wird, so ändert dies jedoch nichts daran, dass diese von ihrem Wesen her eine Ergänzung ist.

Ein Grundeinkommen wird allen Menschen zur Verfügung gestellt, ohne Bedürftigkeitsprüfung und ohne die Bedingung, dass sie arbeiten. Es ist weder eine Mildtätigkeit der staatlichen Gesellschaft angesichts der elenden Situation Einzelner, noch ist es Ausdruck einer sozialen Solidarität mit benachteiligten Mitgliedern der Gesellschaft. Vielmehr ist das Grundeinkommen ein Grundrecht, das auf der Sichtweise aufbaut, dass alle Menschen – unabhängig von Vermögen und Arbeitsstatus – gleichermaßen Teil der Gesellschaft sind und somit alle Menschen es verdienen. Durch die Realisierung eines Grundeinkommens sind nicht mehr besondere Umstände wie Armut, Krankheit oder Unvermögen die Voraussetzung für Sozialfürsorge, sondern es gilt für alle Menschen eine allgemeine Bedingung, etwa dass sie Menschen sind, Mitglieder der Gesellschaft oder Bürger. Entsprechend den Prinzipien der Demokratie müssen für den Erhalt des Grundeinkommens keine besonderen Voraussetzungen erfüllt werden. Es genügt, dass die Empfänger Bürger sind. Die selektive Sozialfürsorge, die auf dem Konzept der gesellschaftlichen Solidarität aufbaut, unterscheidet sich also grundlegend von der allgemeinen Sozialfürsorge für alle, deren zentrales Element das Grundeinkommen ist. Die Unterschiede beziehen sich nicht nur darauf, auf welche Weise und in welchem Umfang Mittel aufgebracht werden. Auch die Einstellung zur Einbeziehung von Bürgern ist anders. Zwischen den beiden Sichtweisen besteht also ein erheblicher gesellschaftsphilosophischer Unterschied. Deshalb dient das Grundeinkommen quasi als Auslöser für eine Loslösung von der solidaritätsorientierten Betrachtungsweise und für die Weiterentwicklung zur wirklichen Einbeziehung aller Menschen auf der Grundlage der substantiellen Gleichberechtigung aller.

Das politische Prinzip der demokratischen Souveränität baut auf dem Grundsatz der Gleichheit aller Menschen auf: Ob reich oder arm, alle Menschen haben gleichermaßen das Recht zu wählen. Auf diesem Grundsatz basiert auch das Grundeinkommen: Alle Menschen bekommen ein Einkommen in derselben Höhe, und sie müssen dafür nur eine einzige Voraussetzung erfüllen, nämlich die, Bürger zu sein. Es gibt keinerlei Bewertung bestimmter wirtschaftlicher Umstände, etwa eine Bedürftigkeitsprüfung oder Anforderungen in Bezug auf die Arbeitstätigkeit. Das Grundeinkommen zeigt deutlich, dass der Kern der allgemeinen Sozialfürsorge darin besteht, dass das System der Fürsorge sich mit dem der Demokratie deckt. Durch das Grundeinkommen wird die allgemeine Sozialfürsorge zum Bestandteil demokratischer Souveränität. Sozialfürsorge ist dann keine Ergänzung mehr, sondern eine Voraussetzung für Demokratie, ein Erfordernis für die Staatslegitimation, das bedingungslos erfüllt werden muss.

### **3. Durch Grundeinkommen und allgemeine Sozialfürsorge zur Sozialen Republik**

Man darf nicht von der Vervollkommnung demokratischer Souveränität sprechen, auch wenn allen Menschen aktives und passives Wahlrecht zuspricht. Das Prinzip der demokratischen Souveränität kann erst dann als vollkommen realisiert betrachtet werden, wenn allen Menschen ein durchschnittlicher Lebensstandard ermöglicht werden kann und sie über ein ausreichendes Einkommen mit garantierter grundlegender Versorgung in den Bereichen medizinische Versorgung, Bildung, Wohnen sowie Kinder- und Altenbetreuung verfügen. Erst unter diesen Bedingungen haben endlich alle Menschen die soziale Voraussetzung, politische Souveränität auszuüben, und erst damit werden alle zum realen Souverän der Republik. Die allgemeine Sozialfürsorge, einschließlich Grundeinkommen, ist der Ausgangspunkt realer demokratischer Souveränität. Sie bietet die existenzielle Grundlage eines politischen Staates und stellt die Mindestvoraussetzung für die Weiterentwicklung zu einer besseren Gesellschaft dar. Nur eine soziale Republik, in der mithilfe eines Grundeinkommens und einer Grundversorgung sozial-ökonomische Gemeinsamkeit von allen Bürgern hergestellt wird, ist als eine demokratische Republik zu gelten.

In einer sozialen Republik gilt Sozialfürsorge nicht als eine Wohltätigkeitsveranstaltung, die dem Menschen vom Staat verteilt wird, sondern als ein universelles Recht, über das alle Menschen

gleichermaßen verfügen. Eine soziale Republik ist zwar ein emanzipierter Wohlfahrtsstaat auf der Grundlage gleicher sozialer Rechte aller Menschen, aber keineswegs ein karitativer Versorgungsstaat, wo die Schwachen als Mitleidwürdiges Wesen betrachtet werden: sie ist ein dynamischer Sozialstaat, der auf der sozialen Gemeinschaft aller Menschen aufbaut und an dem alle Menschen teilhaben. Eine solche Gleichberechtigung aller auf der sozialen Ebene wird am deutlichsten durch ein Grundeinkommen verkörpert. Das Grundeinkommen basiert auf einem universellen Recht, über das alle Menschen gleichermaßen verfügen, und verdeutlicht, dass Demokratie, Gleichberechtigung und Sozialfürsorge einander entsprechen. In der Realisierung eines Grundeinkommens besteht die wichtigste Aufgabe für die Bewegung zur Verwirklichung der sozialen Republik.

#### **4. Einschränkung der neoliberalistischen Enteignungsökonomie durch hohe Besteuerung von Einkommen aus ausbeuterischen Spekulationen und Kapitalerträgen zur Finanzierung des Grundeinkommens**

Im Neoliberalismus ist das Volk enteignet worden, indem die Sozialfürsorge vermarktet und öffentliche Güter privatisiert wurden. Eine solche von Enteignung und Privilegium geprägte Wirtschaft kann durch die Einführung eines Grundeinkommens sowie einer Grundversorgung in den Bereichen medizinische Versorgung, Bildung, Wohnen sowie Kinder- und Altenbetreuung als unantastbare soziale Grundrechte überwunden werden. Als Quelle für die Finanzierung von Grundeinkommen und grundlegender Fürsorge soll dabei die starke Besteuerung von Einkommen aus ausbeuterischen Spekulationen sowie Kapitalerträgen dienen. Durch eine starke Besteuerung von Zinsen, Dividenden und Erbbauzins soll der gegenwärtige Steuersatz, der geradezu lächerlich gering ist, auf das durchschnittliche Niveau in der OECD angehoben und die allgemeine Sozialfürsorge finanziert werden. Damit wird das System kommerzialisierter Sozialfürsorge wieder verstaatlicht. Eine derartige Finanzierung von Grundeinkommen und grundlegender Fürsorge stellt ein der Enteignungsökonomie entgegenwirkendes Programm dar. Mit der steuerlichen Expropriation des finanzkapitalistischen Expropriators wird die neoliberalistische Enteignungsökonomie unter Kontrolle gebracht. Zudem haben diese Maßnahmen auch im Hinblick auf die Einkommensumverteilung eine starke Wirkung. Zusammen mit den Maßnahmen zur Kontrolle des Finanzmarkts und Vergesellschaftung von Finanzinstituten auf der Grundlage des Prinzips des öffentlich-sozialen Finanzwesens wird diese Besteuerung eins der beiden Hauptwerkzeuge zur Bekämpfung der neoliberalistischen Enteignungsökonomie sein.

#### **5. Das Grundeinkommen kurbelt den Inlandsmarkt an und begünstigt so die gleichzeitige Zunahme von Ausfuhr und Inlandsverbrauch**

Die Beziehung zwischen Sozialfürsorge und Wirtschaftswachstum muss dahingehend neu definiert werden, dass Sozialfürsorge kein Nebenprodukt des Wachstums ist, sondern ein eigenständiges Ziel. Durch ein Wachstum ohne Sozialfürsorge werden Ungleichheit und Ungerechtigkeit ständig weiter verschärft. Doch wenn genau diese die Ursache sind, dass ein Wachstum ausbleibt, ist Wachstum mit und durch Sozialfürsorge die einzige Lösung. Sozialfürsorge ist also kein Instrument mehr, um die negativen Nachwirkungen des Wachstums abzumildern, sondern im Gegenteil eine Voraussetzung für qualifiziertes Wachstum. Insbesondere das Grundeinkommen löst das Problem des durch die Polarisierung von Einkommen verursachten zu geringen Verbrauchs und kurbelt den Inlandsverbrauch an, sodass die gleichzeitige Zunahme von Ausfuhren und Inlandsverbrauch möglich wird. Südkorea, das nicht über einen großen Binnenmarkt verfügt, der mit dem der Vereinigten Staaten, Europas, Chinas, Indiens, Brasiliens oder Russlands vergleichbar wäre, kann das exportorientierte Modell des Wirtschaftswachstums natürlich nicht sofort ablegen. Die gleichzeitige Zunahme von Export und Inlandsverbrauch bedeutet, dass das Ungleichgewicht

zwischen Wachstumsrate des Inlandsverbrauchs und der Wirtschaft langfristig korrigiert wird und kurzfristig die schnelle Zunahme des Inlandsverbrauchs die Rate des Brutto-Wirtschaftswachstums übersteigen wird. Das Grundeinkommen ist ein wirksames Mittel zum Erreichen dieses Ziels.

Auch angesichts der schwierigen Lage auf den Weltmärkten, in der der Inlandsverbrauch sich zum entscheidenden Faktor entwickelt hat, ist das Grundeinkommen ein Instrument zur Überwindung der Krise. Die gegenwärtige beispiellose Krise der Weltwirtschaft macht es unumgänglich, die Beziehung zwischen den Finanzzentren und den exportorientierten Staaten neu zu definieren. Die USA haben trotz des gewaltigen Handels- und Haushaltsdefizits zusätzliche Dollar in den Weltmarkt gepumpt und den Binnenmarkt für die exportorientierten Länder stützen lassen. Diese Ordnung des Weltmarktes steckt so tief in der Krise, dass zwangsläufig eine radikale Veränderung erfolgen muss. Solange Länder wie die Vereinigten Staaten, europäische Staaten und Japan den Markt mit Liquiditätsspritzen aus öffentlichen Mitteln versorgen, können Exportländer wie Südkorea ihr Rekordniveau beim Export beibehalten. Können die erstgenannten Länder ihre Binnenmärkte allerdings nicht länger stützen, steht den Exportländern sowohl im Hinblick auf die Ausfuhren als auch auf den eigenen Binnenmärkten eine Krise bevor. Deshalb muss, auch wenn die Abhängigkeit vom Handel nicht sofort abgebaut werden kann, dringend ein Übergang zum Modell der gleichzeitigen Zunahme von Ausfuhr und Inlandsverbrauch stufenweise eingeleitet werden. Die Realisierung eines Grundeinkommens bedeutet den allmählichen Übergang zu einer nachfrageorientierten Wirtschaftspolitik. Mit der Einführung eines Grundeinkommens wird das seit langem bestehende Problem der südkoreanischen Wirtschaft gelöst: die Zuspitzung des Ungleichgewichts zwischen Ausfuhr und Inlandsverbrauchs, das eine Kluft zwischen reichen exportorientierten und armen binnenmarktorientierten Unternehmen verursacht, die wiederum Lohngefälle und soziale Polarisierung zur Folge hat. Das Grundeinkommen legt den Grundstein für ein Ansteigen des Inlandsverbrauchs, mit einem Schwerpunkt auf der unteren Schicht und der Mittelschicht.

## **6. Das Grundeinkommen ist der Grundpfeiler der Sozialwirtschaft und trägt zur Verbesserung der Wirtschaftsstruktur bei**

Arbeitstätigkeiten – auch solche im Haus und im Bereich Betreuung –, die nicht innerhalb eines Arbeitsverhältnisses stattfinden, werden nicht bezahlt, sind jedoch von gesellschaftlicher Bedeutung. Durch die Einführung eines Grundeinkommens erfahren diese Tätigkeiten gesellschaftliche Anerkennung. Zudem erhalten auch freiwillige Tätigkeiten, etwa in Kooperativen oder Unternehmen in Miteigentum, die nicht als Lohnarbeit stattfinden, durch die Einführung des Grundeinkommens eine gesellschaftliche Grundlage. Durch Veränderung der sozialen Form und des gesellschaftlichen Wesens von Arbeit wird mit dem Grundeinkommen eine nicht-kapitalistische Sozialwirtschaft innerhalb des Kapitalismus geschaffen. Außerdem begünstigt das Grundeinkommen die qualitative Veränderung der Arbeit. Ein Grundeinkommen in ausreichender Höhe fördert den Übergang zu kreativer wissensbasierter Arbeit und trägt zur Verbesserung der Wirtschaftsstruktur bei. Mit dem Übergang zur Wissensgesellschaft wird auch ein Wandel der Gesellschaftsstruktur insgesamt einhergehen. Das Bildungs- und Ausbildungssystem sowie das System der Forschung und Entwicklung sollen zu unabhängigen Systemen gemacht und mit Industrie und Produktion auf eine Ebene gestellt werden, sodass die Zeiten von Ausbildung und Forschung genauso wie die Produktionstätigkeit entlohnt werden. Das Grundeinkommen, das die Verknüpfung zwischen Einkommen und Arbeit für die Produktion löst, ist Grundlage und zugleich Voraussetzung für einen solchen Wandel.

## **7. Von einer Gesellschaft der Lohnarbeit zu einer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lich nachgefragten Tätigkeiten, in der die Arbeit aller Menschen wertgeschätzt wird**

In einer Zeit der unsicheren Beschäftigung besteht die wichtigste Aufgabe sicher darin, die Unsicherheit des Einkommens der Menschen abzumildern. Hierfür stellt das Grundeinkommen die realistischste und zugleich auch die innovativste Lösung dar. Die Bedeutung des Grundeinkommens als emanzipatorisches Konzept reicht viel weiter als das Konzept der Einkommensgarantie.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schließt vielmehr eine wesentlich radikalere Veränderung der Gesellschaft ein. Durch die Realisierung eines Grundeinkommens findet ein Übergang von unfreiwilliger Arbeitslosigkeit zu eigenständiger, freiwilliger, kreativer Arbeit statt. Sobald sich aus dem Rahmen der Lohnarbeit eine soziale Form von Arbeit herausgebildet hat, kann der Ausschluss von Lohnarbeit quasi eine Befreiung von Lohnarbeit bedeuten. Ein solcher Übergang ist weitaus fortschrittlicher als das Erreichen einer Vollbeschäftigung. Dass unsichere Beschäftigung nicht mehr ein unsicheres Einkommen bedeuten wird, ist hierbei von eher geringer Bedeutung: Das Grundeinkommen eröffnet einen neuen Weg, die von Lohnarbeit geprägte Gesellschaft durch Stärkung von unabhängiger, freiwilliger und kreativer Arbeit hinter sich zu lassen. Auf diesem Weg vereint das Grundeinkommen das Potenzial einer aktiven Überleitung von der Lohnarbeits-Gesellschaft zu einer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lich nachgefragten Tätigkeiten, in der die Tätigkeit aller Menschen wertgeschätzt wird.